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업무협약서

(주)에이치에너지(이하 “H에너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이하 “H에너지 실증특례” / 산업부 규제특례 제 2021-82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H에너지 실증특례를 통해 협동조합이 생산한 태양광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속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H에너지 및 한전이 상호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H에너지 실증특례는 “협동조합”이 유휴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소속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온라인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 ② “협동조합”은 유휴옥상을 임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태양광 발전을 통해 조합원에게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단체를 말한다.
- ③ “조합원”은 ②항의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지분에 해당하는 태양광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 ④ “태양광전력요금”은 H에너지가 조합원에게 태양광전력 공급을 중개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H에너지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태양광전력 구입비용 외에 중개수수료와 신재생 거래비용을 포함한다.
- ⑤ “신재생 거래비용”은 태양광전력 거래량에 대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태양광전력요금의 항목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8호)」 제18조 제1항 2호부터 8호를 준용하여 정한다.
- ⑥ “부족전력량요금”은 조합원의 전기요금에서 조합원이 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태양광 전력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차감한 금원으로, 한전이 공급한 부족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협력의 범위)** 협약 당사자의 업무협력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 및 추가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① H에너지

1. 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운영을 대행한다. 단,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소재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로 한정한다.
2. 조합원 전기사용장소의 겸침일을 한전과 사전 협의한 지정일로 변경하도록 조합원 모집시 안내하여 조합원의 겸침일 일원화에 협조한다.
3.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태양광전력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되, 그 부족분은 한전이 직접 공급한다.

4. 조합원의 한전 부족전력량요금 정산을 위해 조합원별 태양광전력 구매량 정보를 한전에 매월 제공한다.
5. 조합원으로부터 태양광전력요금과 한전 부족전력량요금을 수취하며, 협동조합에게는 태양광전력 구입비용을, 한전에게는 부족전력량요금과 신재생 거래비용을 각 지급 한다.
6. 조합원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발생한 조합원의 부족전력량요금(한전 전기요금)은 H에너지가 납부의무자(조합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아 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7. 조합원의 가입, 변경, 해지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매월 20일까지(20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까지) 한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익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본 실증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민원에 대응한다.

## ② 한전

1.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태양광발전량 정보와 조합원별 전력사용량 정보를 H에너지에게 매월 제공한다.
2. 조합원의 전기요금에서 태양광전력 구매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차감한 부족전력량 요금을 H에너지에게 일괄 청구할 수 있다. 단, H에너지가 요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태양광전력 거래량에 해당하는 신재생 거래비용은 부족전력량요금과 분리하여 H 에너지에게 청구하며, 청구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본 실증사업에서 태양광전력 거래에 따른 신재생 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전기사업법 또는 산업부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으로 청구항목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H에너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청구항목	거래 단가	비 고
송·배전망 이용요금		
망손실 비		
부가정산금		
복지·특례비용		
거래수수료		
전력기반기금		
부가가치세		

※ 전력손실률, 주택용판매단가, 부가정산금, 복지·특례비용 단가는 변경시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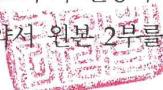
※ 송·배전망 이용요금은 발전소와 조합원간 송·배전망 접속유형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협약 당사자는 본 실증특례 기간중에는 물론 종료 후에도 본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고객정보 포함)를 본 협약과 무관하게 이용하거나, 타방 협약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조(소송관할)**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6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효력)**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실증특례 종료일(23.10.28, 최대 2년연장 가능)까지 유효하며,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화자~~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29일

한국전력공사

(주)에이치에너지

사장 정승



대표이사 함일

